

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2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	2009. 6. 29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「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」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하고,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재원의 지원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로써 지원하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이 없는 용어를 일부 삭제하고,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뜻을 명확히 함과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계법령에 맞게 신설함(안 제1조, 제2조).

- “승강기산업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함
- 지원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
 - “기술혁신지원기관”(안 제2조제2호 삭제)
 - “산·학·연·관 협력”(안 제2조제3호 삭제)
- 목적조항을 간명화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신설함
 - “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”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(안 제2조제4호 신설)
 - “수익용 기본재산”(안 제2조제6호 신설)
- 현행 제2조제4호(“교육용 기본재산”)를 제5호로 이동

나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원의 지원근거에 대한 상위 법령 및 조항을 정비함(안 제3조제2항 본문).
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
→ 「사립학교법」 제43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

다. 조례로써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목적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도록 변경함(안 제3조제2항 각 호).

-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, 훈련 및 양성
 -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
- 승강기산업 기술연구장비·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
 -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·개선사업
-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
 -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- 산·학·연·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
 -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, 제3조, 제10조, 제12조, 제28조,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5조, 제12조, 제17조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, 제4조,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-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10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4조, 제5조, 제20조, 제28조, 제40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사안발생시 추경예산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9. 5. 19. ~ 2009. 6. 9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”을 “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4조·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, 교지, 교원”을 “제4조·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·교지 및 교원”으로 하여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승강기산업”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·장치나 그 부품을 제조·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.
4. “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”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이란 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.
6. “수익용 기본재산”이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재산출연 등”을 “지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연”을 “지원”으로, “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”를 “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”로 한다.

② 군수는 「사립학교법」 제43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에 따라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
2.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·개선사업
3.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
4.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여건 개선사업

제4조의 제목 “공유재산의 대부 등”을 “공유재산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대부 또는 사용허가”를 “대부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출연금”을 “지원받은 재산의”로, “출연”을 “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는 승강기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,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는 <u>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</u> 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(본문 생략)</p> <p>1. “<u>승강기산업</u>”이란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생산·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기술혁신지원기관</u>”이란 승강기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,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, 대학, 민간연구소를 말한다.</p> <p>3. “<u>산·학·연·관 협력</u>”이란 기업, 대학, 기술혁신지원기관, 도, 군 및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1. “<u>승강기산업</u>”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·장치나 그 부품을 제조·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4. “<u>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</u>”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이란 「<u>사립학교법</u>」 제10조 및 「<u>고등교육법</u>」 제4조에 따라 <u>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4. “교육용 기본재산”이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·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, 교지, 교원을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3조(재산출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대학으로 하여금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, 훈련 및 양성 2. 승강기산업 기술연구장비·시설의 확충 및 활용 촉진 3. 승강기산업 연관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4. 산·학·연·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	<p>5. ----- ----- 제4조·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·교지 및 교원-----.</p> <p>6. “수익용 기본재산”이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군수는 「사립학교법」 제43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7조에 따라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2.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·개선사업 3.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. 그 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

현행	개정안
<p>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</u>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공유재산의 <u>대부 등</u>) 군수는 대학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대학에 공유재산을 <u>대부 또는 사용 허가</u>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보고 및 검사) ① 군수는 <u>출연금</u>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대학에 요구하거나 군비의 <u>출연</u>과 관련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<u>제1항의 규정</u>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지원-----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<u>규정에</u> -----.</p> <p>제4조(공유재산 지원) ----- ----- ----- <u>대부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</u>-----.</p> <p>제6조(보고 및 검사) ① --- <u>지원받은 재산의</u> ----- ----- <u>지원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.</p>